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략)

5. 討論 要旨 (없음)

6. 修正案의 要旨 (없음)

7. 審查結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

서울특별시종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. 6. 15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민행정위원회

1. 審查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6월 3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6월 8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5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 6. 15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박종인)

가. 제안이유

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제정 · 시행(2005. 3. 18)됨에 따라
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사항중 관련 조항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공무원 또는 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비밀엄수 조항을 신설함 (안 제3조2)
- 2005.7.1일부터 주5일제 근무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재직기간별 연가
일수를 축소(1~2일)함 (안 제18조)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 범위 지정 (안 제30조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보고자 : 전문위원 박성열) — 별첨 검토보고서 참조

4. 質疑 및 答辯 要旨 (생략)

5. 討論 要旨 (없음)

6. 修正案의 要旨 (없음)

7. 審 査 結 果 : 원안가결

(종로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함)

서울특별시 종로구 사회복지협의체 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5. 6. 15.
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
시민행정위원회

1. 審查經過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6월 3일 · 종로구청장 원안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5년 6월 8일 원안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151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임시회
제1차 시민행정위원회(2005. 6. 15) 상정 · 의결

2. 提案說明의 要旨 (제안설명자 : 생활복지국장 조성린)

가. 제안이유

「사회복지사업법」이 개정(2003. 7. 30)됨에 따라 우리구 사회복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계획의 체계화 및 사회복지·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·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도모하기 위함.

나. 주요골자

- 사회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 (안 제2조)
 - 대표협의체 :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·시행·평가,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 서비스의 연계·협력 등 지역사회 복지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및 건의
 - 실무협의체 : 대표협의체의 기능 및 효율적 업무추진을 지원
-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 (안 제3조)
 - 구성위원 :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하고
 - 대표협의체는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, 구청장·생활복지국장·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인의 공동위원장으로 구성